

안양 어반포레 자연앤 e편한세상(국민) 입주자모집공고



■ 공고번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제2022-12호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29층 18개동, 총 2,329세대
 * 일반분양(국민주택) 1,058세대 [1블럭 97세대(전용면적 46㎡ 97세대), 3블럭 696세대(전용면적 59㎡ 226세대, 74㎡ 378세대, 84㎡ 92세대), 4블럭 265세대(전용면적 46㎡ 195세대, 59㎡ 70세대)]

목 차

■ 신청시 유의사항 - 2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 4

1. 공급규모
2. 공급대상
3. 공급가격(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4. 발코니 확장금액 및 추가선택품목 안내
5.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6. 입주금 납부 안내

II. 신청기준 - 10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3. 소득기준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13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 신혼부부 특별공급
4. 생애최초 특별공급
5.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6. 일반공급

IV. 신청 시 확인사항 - 17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2. 전매제한 및 재당첨 제한 안내
3.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V. 신청방법 - 19

1. 신청일정 및 장소
2. 신청 시 유의사항
3. PC인터넷 신청·모바일 신청
4.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VI. 당첨자 발표 일정 - 20

VII.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 21

1.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구비서류
2. 계약 체결 시 일정 및 구비서류

VIII. 기타 유의사항 - 24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 관한 사항
3.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4. 벌칙 등
5.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6.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IX. 기타 안내사항 - 27

1. 지구 및 단지계획 여건
2.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3.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5.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6.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7. 주택전시관 및 공식 홈페이지 안내
8.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9.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10.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11. 입주예정월 및 부대복리시설 안내

[코로나19 관련 주택전시관 운영 안내 사항]

-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주택전시관 관람을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www.elife.co.kr)에서도 동시 운영되므로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관람을 위한 방문예약은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방문예약자에 한해 오픈기간, 당첨자(예비 당첨자 포함) 서류접수 기간 및 계약체결 기간에 한하여 사전 예약 후 주택전시관 방문이 가능하며 주택전시관 내 전시된 유니트 마감제, 모형도 등 관람이 가능 합니다.
 - 주택전시관 방문은 사전방문 예약자, 당첨자 및 계약자 외 1명 동반 입장이 가능하며(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방문은 사이버 주택전시관(www.elife.co.kr)을 통해 사전 예약하여 주택전시관 방문가능기간(사전방문 예약 오픈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 계약체결 기간 등) 동안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방문인원의 축소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주택전시관 방문이 불가합니다.
- 주택전시관 방문 기간 내 방문 시 아래의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주택전시관 입장 시 마스크 미착용
 - 주택전시관 입장 시 체온측정 온도가 37.5도가 넘는 경우
 - 주택전시관 입장 시 손 소독, 체온측정 등의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방문자 본인이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이거나, 가족 혹은 일상적 접촉이 잦은 지인 중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 예약한 방문날짜 또는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주택전시관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주택전시관 방문가능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은 주택전시관 내 분양상담전화(☎1811-8988) 등을 통해 분양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상담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가 있으나 양해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과 관련하여 주택전시관 내 상담 및 전화상담은 고객 여러분들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을 모두 반영하여 상담하기가 어렵고, 제한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사오니, 반드시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와 한국부동산원(청약홈)을 통해서 청약자격, 제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관련하여서는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1블럭, 3블럭, 4블럭 통합청약이나 주주택별 타입(약식 표기)을 통해 단지별 선택이 가능하므로 타입(약식표기)을 확인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또는 사이버 주택전시관(www.elife.co.kr)을 통한 공급주택별 단지배치를 확인하시어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분양하는 국민주택으로 「주택법」(시행 2021.12.21.)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1.11.16.)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1.14.(금)이며,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아파트 당첨자 발표일(2022.02.07.(월))과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1건만 청약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본 아파트의 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처리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 본인이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국민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청 제한 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과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청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청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14(금))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양육)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안양시 2년 이상 거주자(2020.01.14)이전부터 계속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안양시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안양시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기간(90일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 전매제한 부기등기
 - 사업주체는 「주택법」제6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본 주택의 소유권을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경기주택도시공사(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 포함)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예) 전손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세대내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과거 특별공급 당첨사실 및 해당제한 기간 내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1회 특별공급 간주)로 판단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후모양자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청약통장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후모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6회 이상) ·철거민, 장애인 불필요	불필요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24개월, 2회 이상)	필요 (24개월, 2회 이상) ·선납금 포함 600만원이상	필요 (24개월, 2회 이상)	필요 (2순위)
소득요건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통장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은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	○	○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청약통장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서울, 경기, 인천)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최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나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제당첨 제한)으로 처리 및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제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증빙자료 포함) 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의 일괄 주택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위한 '주택취득 자금조달(증빙자료 포함) 및 입주 계획서'를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체 :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참고하여 기재]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5년	5년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안양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자격검증 서류제출 (당첨자 적격여부 확인)	계약체결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해당)	1순위 (기타)	2순위				
일정	2022.01.24(월)		2022.01.25(화)	2022.01.26(수)	2022.01.27(목)	2022.02.07(월)	2022.02.09(수) ~ 02.14(월)	2022.03.11(금) ~ 03.16(수)
방법	인터넷 청약(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 사전방문예약제 (구비서류 등 지침 방문) ■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주택전시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3-15번지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공급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29층 18개동, 총 2,329세대 (일반분양 아파트 1,087세대 중 전용면적 46㎡A1/B4, 59㎡A3/B3/C4/D4, 74㎡A3/B3/C3, 84㎡A3/B3 총 1,058세대) [기관추천 105세대, 국가 유공자 52세대, 다자녀가구 105세대, 신혼부부 316세대, 노부모부양 52세대, 생애최초 264세대 포함]
- 입주예정시기 : 2025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단지별 세대수

구분	46A1	46B4	59A3	59B3	59C4	59D4	74A3	74B3	74C3	84A3	84B3	계
1블럭	97	-	-	-	-	-	-	-	-	-	-	97
3블럭	-	-	189	37	-	-	53	207	118	76	16	696
4블럭	-	195	-	-	56	14	-	-	-	-	-	265
계	97	195	189	37	56	14	53	207	118	76	16	1,058

※ 주택전시관 또는 사이버 주택전시관(www.elife.co.kr)을 통한 블록별 '주택형'을 확인하시고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대상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수)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국가 유공자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국민 주택	2021000963	01	046.5667A	46A1	46.5667	23.7990	70.3657	45.1232	115.4889	33.9313	97	10	5	10	29	5	24	83	14	6
		02	046.5667B	46B4	46.5667	21.6979	68.2646	36.1940	104.4586	25.7938	195	19	10	18	58	9	49	163	32	14
		03	059.5794A	59A3	59.5794	20.8817	80.4611	32.7951	113.2562	31.7136	189	18	9	18	57	9	47	158	31	15
		04	059.5873B	59B3	59.5873	21.6857	81.2730	32.7995	114.0725	32.0336	37	4	2	4	11	1	9	31	6	3
		05	059.5794C	59C4	59.5794	28.3864	87.9658	46.3083	134.2741	33.2378	56	6	3	6	17	3	14	49	7	4
		06	059.5873D	59D4	59.5873	29.1914	88.7787	46.3144	135.0931	33.5450	14	1	1	2	4	1	4	13	1	1
		07	074.9658A	74A3	74.9658	25.1992	100.1650	41.2646	141.4296	39.4798	53	5	3	6	16	3	13	46	7	3
		08	074.9924B	74B3	74.9924	25.0628	100.0552	41.2792	141.3344	39.4366	207	21	10	20	62	10	52	175	32	12
		09	074.9614C	74C3	74.9614	26.0618	101.0232	41.2620	142.2852	39.8181	118	12	5	12	35	6	29	99	19	7
		10	084.9869A	84A3	84.9869	28.3213	113.3082	46.7806	160.0888	44.6602	76	8	3	8	22	4	19	64	12	15
		11	084.9246B	84B3	84.9246	28.6467	113.5713	46.7462	160.3175	44.7639	16	1	1	1	5	1	4	13	3	3
합계											1,058	105	52	105	316	52	264	894	164	83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태별 공급세대수

구분		46A1	46B4	59A3	59B3	59C4	59D4	74A3	74B3	74C3	84A3	84B3	소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경기도	0	2	1	1	0	0	1	1	1	1	0	8
	서울특별시	0	2	0	0	0	0	0	1	0	0	0	3

[10%]	인천광역시	0	1	0	0	0	0	0	1	0	1	0	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2	0	0	0	0	2	1	0	0	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2	0	0	0	0	2	0	0	0	6
	중소기업근로자	1	1	1	0	1	0	0	1	1	0	0	6
	철거민	0	2	1	1	1	0	1	1	1	1	1	10
	북한이탈주민	1	1	1	0	1	0	0	2	1	0	0	7
	우수선수	1	1	2	0	0	1	0	2	1	1	0	9
	우수기능인	1	1	2	0	0	0	1	2	1	1	0	9
	공무원	0	2	1	0	1	0	0	2	1	0	0	7
	의사상자	1	1	1	0	1	0	1	1	1	1	0	8
	납북피해자	1	1	1	0	1	0	1	1	1	1	0	8
	다문화가족	1	1	1	1	0	0	0	1	1	0	0	6
체육유공자	1	1	2	1	0	0	0	1	1	1	0	8	
국가유공자 [5%]		5	10	9	2	3	1	3	10	5	3	1	5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	안양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5	9	9	2	3	1	3	10	6	4	1	53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5	9	9	2	3	1	3	10	6	4	0	52
신혼부부 특별공급 [30%]		29	58	57	11	17	4	16	62	35	22	5	31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5	9	9	1	3	1	3	10	6	4	1	52
생애최초 특별공급 [25%]		24	49	47	9	14	4	13	52	29	19	4	264
합계		83	163	158	31	49	13	46	175	99	64	13	894

■ 공통 유의사항

- 주택형 구분은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카달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명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청약신청시 주택형 표시안례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46.5667A	046.5667B	059.5794A	059.5873B	059.5794C	059.5873D	074.9658A	074.9924B	074.9614C	084.9869A	084.9246B
약식표기	46A1	46B4	59A3	59B3	59C4	59D4	74A3	74B3	74C3	84A3	84B3

3. 공급가격(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1블럭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동(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계약시	중도금(60%)						
								1회(10%) 2022.06.30	2회(10%) 2022.12.30	3회(10%) 2023.06.30	4회(10%) 2023.12.29	5회(10%) 2024.04.30		6회(10%) 2024.08.30
46A1	97	102동 (1,2,3,4,5,6호)	1층	5	456,0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136,800,000	
			2층	6	464,0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139,200,000	
			3층	6	470,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141,000,000	
			4층	6	474,0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142,200,000	
			5~15층	64	487,0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46,100,000	
			16층 이상	10	496,0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48,800,000	

■ 3블럭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동(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계약시	중도금(60%)						
								1회(10%) 2022.06.30	2회(10%) 2022.12.30	3회(10%) 2023.06.30	4회(10%) 2023.12.29	5회(10%) 2024.04.30		6회(10%) 2024.08.30
59A3	189	301동 (1,2,3호) 302,303,307동 (2,3호) 304,305동 (2,3,5호)	1층	8	559,0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167,700,000	
			2층	13	565,0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169,500,000	
			3층	15	572,0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171,600,000	
			4층	15	578,0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173,400,000	
			5~15층	108	590,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177,000,000	
			16층 이상	30	607,0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182,100,000	
59B3	37	302,303,307동 (1호)	1층	3	560,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68,000,000	
			2층	3	568,0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170,400,000	
			3층	3	573,0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171,900,000	
			4층	3	580,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174,000,000	

			5~15층	22	592,0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177,600,000
			16층 이상	3	608,0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74A3	53	308동 (1.3.4호)	1층	2	60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80,000,000
			2층	3	607,0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182,100,000
			3층	3	614,0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184,200,000
			4층	3	622,0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186,600,000
			5~15층	33	639,0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191,700,000
			16층 이상	9	653,0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195,900,000
			74B3	207	301.302.303.304. 305.306.307동 (4호) 308.309.310.311. 312동 (2호)	1층	7	590,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2층	11	599,0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179,700,000	
			3층	12	605,0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181,500,000	
			4층	12	612,0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183,600,000	
			5~15층	132	631,0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189,300,000	
			16층 이상	33	645,0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193,500,000	
74C3	118	301.302.303.307. 308동 (5호) 304.305동(1호)	1층	4	60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80,000,000
			2층	5	608,0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182,400,000
			3층	7	615,0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184,500,000
			4층	7	624,0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187,200,000
			5~15층	77	641,0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192,300,000
			16층 이상	18	657,0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197,100,000
			84A3	76	306동 (2.3.5호) 309.310.311.312동 (1.3.4호)	1층	12	661,0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2층	15	671,0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201,300,000	
			3층	15	679,0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203,700,000	
			4층	6	687,0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206,100,000	
			16층 이상	28	722,0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216,600,000	
84B3	16	306동 (1호) 311.312동(5호)	1층	3	658,0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197,400,000
			2층	3	669,0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200,700,000
			3층	3	676,0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202,800,000
			4층	1	684,0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205,200,000
			16층 이상	6	719,0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215,700,000

■ 4블럭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동(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2022.06.30	2022.12.30	2023.06.30	2023.12.29	2024.04.30	2024.08.30		
46B4	195	401동 (1.2.3.4.5.6호) 402동 (1.2.3.4.5.6.7.8호)	1층	10	404,0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121,200,000
			2층	14	409,0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122,700,000
			3층	14	415,0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124,500,000
			4층	14	419,0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125,700,000
			5~15층	143	431,0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129,300,000
59C4	56	403동 (2.3.4.5호)	2층	4	574,0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172,200,000
			3층	4	582,000,000	58,200,000	58,200,000	58,200,000	58,200,000	58,200,000	58,200,000	58,200,000	174,600,000	
			4층	4	588,0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176,400,000	
			5~15층	32	604,0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181,200,000	
			16층 이상	12	617,0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185,100,000	
59D4	14	403동 (1호)	2층	1	579,0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173,700,000	
			3층	1	585,0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75,500,000	
			4층	1	592,0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177,600,000	
			5~15층	8	606,0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181,800,000	
			16층 이상	3	622,0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186,600,000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II)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주거전용 및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등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전수금을 부과합니다.

4. 발코니 확장금액 및 추가선택품목 안내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시	2022.06.30	입주지정일
46A1	1,100,000	110,000	220,000	770,000
46B4	1,100,000	110,000	220,000	770,000
59A3	3,000,000	300,000	600,000	2,100,000
59C4	3,000,000	300,000	600,000	2,100,000
59B3	3,400,000	340,000	680,000	2,380,000
59D4	3,400,000	340,000	680,000	2,380,000
74A3	3,800,000	380,000	760,000	2,660,000
74B3	3,100,000	310,000	620,000	2,170,000
74C3	4,400,000	440,000	880,000	3,080,000
84A3	5,000,000	500,000	1,000,000	3,500,000
84B3	5,600,000	560,000	1,120,000	3,92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농협	동·호수별 가상계좌	경기주택도시공사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 될 예정으로 계약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II)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 중 중도금 납부일정은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301동 701호 계약자 → '30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가 발코니 확장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일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변경)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시 시공 및 공간 부족등의 사유로 추가선택품목(II)선택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사이버 주택전시관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 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자료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세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통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통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됩니다. 또한, 평면 및 시공조건에 따라 선통통 또는 배수구는 사이버 주택전시관 상 표현된 위치와 다르게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내부 형상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결로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내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절한 거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시 마이너스 옵션 선택으로 인해 미설치 되는 품목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비의 비용감소는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

- 추가선택품목(II)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 상세내용은 추후 별도로 분양계약자에게 공지 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II) 판매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설치위치	설치 대수	판매가격	제조사	비고
46A1,46B4	침실2	1	1,140,000	삼성/LG	
59A3,59C4	침실2+침실3	2	1,950,000	삼성/LG	
59B3,59D4	침실2+침실3	2	1,950,000	삼성/LG	
74A3	침실2+침실3	2	2,250,000	삼성/LG	
74B3	침실2+침실3	2	2,250,000	삼성/LG	
74C3	침실2+침실3	2	2,250,000	삼성/LG	
84A3	침실2+침실3	2	2,250,000	삼성/LG	
84B3	침실2+침실3	2	2,250,000	삼성/LG	

- 실내기 및 실외기 모델은 주택형별,가전사별,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판매시 별도로 세부 안내 예정입니다.
-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공기청정형에어컨 미판매합니다.
- 천장형시스템에어컨은 46타입의 경우 거실과 침실1에 기본으로 2대가 제공되고 침실2에는 천장형시스템에어컨 설치용 천장배관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59,74,84타입의 경우는 거실과 침실1에 기본으로 2대가 제공되고 침실2,침실3에는 천장형시스템에어컨 설치용 천장배관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질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2) 빌트인 가전제품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적용타입(주택형)	제조사	구성내용 및 상품모델		판매가격	비고
오브제컬렉션	46A1,46B4	LG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BC4S1AA1 (G)	3,590,000
	59A3,59B3,59C4,59D4	LG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BC4S1AA1 (G)	6,650,000
	74A3,74B3,74C3 84A3,84B3		+ 오브제컬렉션 김치냉장고 + 팬트리장		BC3K1AA1 (G)	
비스포크	46A1,46B4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 + 비스포크 1도어 변온냉장고		RR40A7(9/8)95AP (satin) RZ24A5(9/8)G0AP (satin)	3,350,000
	59A3,59B3,59C4,59D4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 + 비스포크 1도어 변온냉장고		RR40A7(9/8)95AP (satin) RZ24A5(9/8)G0AP (satin)	6,500,000
	74A3,74B3,74C3 84A3,84B3		+ 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 + 팬트리장		RQ34A7(9/8)45AP (satin)	
식기세척기	59A3,59B3,59C4,59D4	삼성	삼성 식기세척기 (슬림형/8인용)		DW50T4065SS	620,000
	74A3,74B3,74C3 84A3,84B	SK매직	SK매직 식기세척기 (슬림형/8인용)		DWA2628B	500,000
인덕션	전타입	SK매직	보더리스 인덕션		IHR-BQ40E	1,300,000

3) 붙박이 가구류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적용타입(주택형)	설치 위치 및 내용		판매가격	비고	
손빨래하부장	84A3	손빨래 하부장		990,000		
	84B3	손빨래 하부장		990,000		
침실1 드레스룸 특화	74A3	ALT1	붙박이장	3,650,000	택1 의류관리기 미포함 (설치 공간만 제공)	
		ALT2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3,420,000		
	84A3	ALT1	붙박이장	3,970,000	택1 의류관리기 미포함 (설치 공간만 제공)	
		ALT2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3,600,000		
붙박이가구	침실2	74A3	침실2 붙박이장	1,450,000		
		74B3	침실2 붙박이장	1,450,000		
		84A3	침실2 붙박이장	1,450,000		
	침실3	59B3,59D4	ALT1	침실3 붙박이장	1,450,000	택1
			ALT2	침실3 드레스룸	960,000	
		74C3	ALT1	침실3 붙박이장	1,450,000	택1
			ALT2	침실3 드레스룸	1,040,000	
			ALT1	침실3 붙박이장	1,660,000	
		84B3	ALT2	침실3 드레스룸	1,220,000	택1

4) 마감재 선택형

■ 거실 마감재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 위치 및 내용		판매가격	비고	
거실 세라믹 패널	46A1,46B4	ALT1	Statuario Gold (무광)	거실1개면	1,800,000	택1
		ALT2	Imperial Ivory (유광)	거실1개면	1,800,000	
	59A3,59C4	ALT1	Statuario Gold (무광)	거실1개면	4,200,000	택1
		ALT2	Imperial Ivory (유광)	거실1개면	4,200,000	
	59B3,59D4	ALT1	Statuario Gold (무광)	거실1개면	4,800,000	택1
		ALT2	Imperial Ivory (유광)	거실1개면	4,800,000	
	74A3	ALT1	Statuario Gold (무광)	거실1개면	4,200,000	택1
		ALT2	Imperial Ivory (유광)	거실1개면	4,200,000	
	74B3	ALT1	Statuario Gold (무광)	거실1개면	4,200,000	택1
		ALT2	Imperial Ivory (유광)	거실1개면	4,200,000	
	74C3	ALT1	Statuario Gold (무광)	거실1개면	4,500,000	택1
		ALT2	Imperial Ivory (유광)	거실1개면	4,500,000	
	84A3	ALT1	Statuario Gold (무광)	거실1개면	4,800,000	택1
		ALT2	Imperial Ivory (유광)	거실1개면	4,800,000	
	84B3	ALT1	Statuario Gold (무광)	거실1개면	4,800,000	택1
		ALT2	Imperial Ivory (유광)	거실1개면	4,800,000	

■ 추가선택품목(II)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후안내	동·호수별 가상계좌	추후안내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 될 예정으로 계약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II)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301동 701호 계약자 → '30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추가선택품목(II)(이하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상세내용 중 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시 별도의 안내 후 계약 진행합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아파트 공급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현장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세대 및 발코니 미확장 세대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관리문제(벌주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추가품목계약시 계약 가능기간 안내), 중도금 납부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 (제품의 품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 후 신모델 출시시 동제조사의 등급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등급, 동가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알재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서비스내용 및 제품에 대한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서비스내용에 대한 민원,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적용 및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실과 안방(침실1)의 천장형시스템에어컨 2대를 제외한 침실2와 침실3의 천장형시스템에어컨 실내기를 판매하며, 선택시 증량되는 실외기 증가금액과 설치비용을 가산하고 천장배관 비용은 차감하여 판매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추가선택품목 공사 미 선택 세대의 에어컨은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이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개별 설치하여야 하며, 벽걸이형 및 스탠드형 설치는 불가하고 천장형 에어컨만 설치가 가능 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시문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온전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인덕션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2구+하이라이트구)은 시공 및 제공 되지 않으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을 가감 적용하였습니다
- 불박이가구 및 빌트인가전 선택시 설치부위 가구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삼성 비스포크, LG오브제 가전은 B2B 전용모델이며 상기 표기된 바와 같이 맞춤 구성된 세트로만 판매하고 상품의 조합 및 설치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모델, 디자인, 핀벌색상 등 변경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중 식기세척기는 수납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슬림형(8인용)으로 설치되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시에는 기본 설계안대로 시공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세대(일부)로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주택형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상품구성 및 디자인, 색상, 제품모델,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5.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 공동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 천장, 일반가구, 주방, 욕실, 창호,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점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문	목재문(문틀, 문책, 도어록 및 경철 등 하드웨어일체, 문선)	발코니 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디지털도어록, 소방관련방화문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비닐트 및 벽배널류 등), 가벽형벽체, 발코니-실외기실의 벽체도장 재료분리대(목실포함)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월패드, 일괄소등스위치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동림(물담), 우물천장 인테리어마감, 발코니 천장도장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욕실	천장,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 수전등), 샤워부스, 욕실악세서리일체, 욕실장, 뒷선반, 욕실스피커폰, 바닥배수구커버, 비데, 복합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액체방수 및 구제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욕실바닥 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가스쿡탑, 주방TV,음식물물수기	소방경사 관련 후드, 전기배관 및 배선, 주방 배기덕트
조명기구	부착/매입/겨치형 조명등기구(간접조명 포함), 욕실매입등	배선 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일반가구	신발장, 현관창고(도어 및 시스템선반/해당주택형),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해당주택형), 침실불박이장(장 주택형별 1개소), 드레스룸장(도어 및 시스템선반/해당주택형), 발코니선반 등 가구일체	-
기타	발코니 수전류	설비배관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타입	46A1	46B4	59A3	59C4	59B3	59D4	74A3	74B3	74C3	84A3	84B3
금액	19,885,891	19,290,113	22,432,144	24,568,848	22,593,680	24,795,891	27,209,822	27,179,995	27,394,538	30,780,172	30,851,643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된 통풍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 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므로 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변식의 칸막이 제거(변경)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나,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건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방기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기 시공된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가능한 제품 또는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 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입주금 납부 안내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로 납부 시에는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권의 중도금 집대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대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II 신청기준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제4조 제5항에 신청자격별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 또는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초과 및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일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1.14)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안양시)	100%	· 공고일 현재 안양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②기타지역(수도권)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경우 잔여 물량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	· 공고일 현재 서울·인천·경기 거주자(안양시 2년 미만 거주자 포함)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관련 공통사항**
 - ※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입니다.
 - ※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 모집공고일까지 지역 우선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시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당첨자 선정 불가)을 받게 되오니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생애최초·노부모·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일순위 경쟁 시 상기 지역우선 공급 기준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2.02.07) 후 주택(분양권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포함)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단,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외의 경우 세대주만 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세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상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납입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기준 적용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된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아래의 “<표3> 조희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첨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14)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120% 이하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노부모부양	120% 이하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생애최초	우선공급(70%)	100% 이하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일반공급(30%)	130% 이하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신혼부부	우선공급(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일반공급(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40% 이하	8,442,224	9,931,887	9,931,887	10,351,106	10,889,232	11,427,359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이하	9,648,256	11,350,728	11,350,728	11,829,835	12,444,837	13,059,838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다자녀 ·노부모·생애최초 특별공급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청약 신청이 불가)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3>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3>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표3>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1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분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해당하는 아래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② 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추천대상자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5%)	경기남부 보훈지청 복지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기관추천 (10%)	장애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 복지과
	철거민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재개발2팀
	장기복무 세대군인		경기남부 보훈지청 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벤처기업청(경기지역담당)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부
	우수선수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우수기능인		글로벌속련기술진흥원
	공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의사상자	경기도청복지사업과	
납북피해자	통일부 이산가족과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문화가족	경기도청 가족다문화과		
체육유공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분양주택(모든지역, 모든주택포함)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1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분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여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에 의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 아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② 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이하	7,236,192원	8,513,046원	8,513,046원	8,872,376원	9,333,628원	9,794,879원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의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점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안양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에게 공급하며,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낙첨시 나머지 50% 물량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경쟁),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2018-269호] 운용지침」(2018.05.08.)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기준표에 의한 높은점수 순에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정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지역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기타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5명 이상 4명 3명	40 35 30	자녀(태어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2명 1명	15 10 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5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20 15 10	
무주택 기간 (4)	20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20 15 1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5 10 5	
		공급신청자가 해당 시·도*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도 본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6)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 예1) 공고일 현재 만30세인 신청자와 만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 예2) 공고일 현재 만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만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만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 예1) 공고일 현재 만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 예2) 공고일 현재 만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 예3) 공고일 현재 만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최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1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1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태아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등을 통해 사실을 증명해야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7,236,192원	8,513,046원	8,513,046원	8,872,376원	9,333,628원	9,794,879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40% 이하	8,442,224원	9,931,887원	9,931,887원	10,351,106원	10,889,232원	11,427,35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이하	9,648,256원	11,350,728원	11,350,728원	11,829,835원	12,444,837원	13,059,838원

-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에게 잔여공급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포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 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1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중 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일반공급(상위소득,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분양주택(모든지역, 모든주택포함)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4조에 따른 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잔여공급 합니다.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을 우선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소수점이하는 올림)에 대하여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계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1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6조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 된 분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자(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이하	7,236,192원	8,513,046원	8,513,046원	8,872,376원	9,333,628원	9,794,879원

- ④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분양주택(모든지역, 모든주택포함)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4>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계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4>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전용 40㎡초과]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6.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1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최초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 해제 및 본 아파트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분양주택(모든지역, 모든주택포함)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최초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안양시,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2순위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4>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전용 40㎡초과]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는 “Ⅱ. 신청기준의”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IV 신청 시 확인사항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한국부동산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제한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독 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2. 전매제한 및 재당첨 제한 안내

-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특별공급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호 공통사항 중 라목에 따라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비록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특별공급의 전매제한기간이 5년이라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다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점부터 추가 2년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2.02.07)로부터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전매제한 및 거주무 기간은 청약 시점의 관계법령을 적용받아 결정될 예정이며, 현행 법령에 따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거주무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5년	-

■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의 산정기준일은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며, 거주무의 산정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3.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인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에 속한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세대에 속한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인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청약 당첨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합니다.

V 신청방법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 일시	신청 방법	신청 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01.24(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당사 주택전시관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청약홈' 앱 · 당사 주택전시관(고령사,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일반공급	1순위(해당)	2022.01.25(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청약홈'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고령사,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1순위(기타)	2022.01.26(수) 09:00~17:30		
	2순위	2022.01.27(목) 09:00~17:30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학폭 등 청약자격에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보 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분(특별공급신청자에 한함)만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하여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해당 공급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거주·기타지역(수도권) 거주, 2순위) 접수일자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청약 신청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내역에 대해 적합성 등은 검증하지 않으며, 신청자격 적격여부 검증은 당첨된 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한해 실시합니다.
- 공급구분 및 신청자격별 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 당첨발표 전 신청자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주택소유여부, 자산기준 등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으로 청약 입주자모집 접수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해당제한 적용주택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제한 사항(본인 및 세대구성원)을 조회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등으로 단지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공급유형별 신청기한이 지나면 청약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불가함)
- 공급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한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 PC인터넷 신청·모바일 신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PC인터넷 신청·모바일 신청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이용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명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을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분	조회방법
청약통장 가입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4.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은행업무 시간이 상이하오니 은행업무 시간 및 구비서류를 해당은행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 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50%;">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width:50%;">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증명서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I 당첨자 발표 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2.02.07(월)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시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2.07(월) ~ 2022.02.16(수)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2.07(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국가유공자)

구분	선정 방법
및 예비입주자 선정	<p>포함)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이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p>•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4>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안양시 2년이상 계속거주 ▶ 3년 이상 기간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 저축총액이 많은자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며 안양시 2년이상 계속거주 ▶ 3년 이상 기간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 저축총액이 많은자의 순서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전시관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모두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신청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다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VII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1.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구비서류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 제출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2022.02.09(수) ~ 2022.02.14(월) (10: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주택전시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3-15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방문예약제 - 당사 홈페이지(www.elife.co.kr)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	특별공급 2022.02.15(화) ~ 2022.02.17(목) (10:00 ~ 17:00)		
	일반공급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2022.02.09(수) ~ 2022.02.14(월))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 및 계약체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사 홈페이지(www.elife.co.kr)를 통해 '사전방문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당사 홈페이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주택전시관 방문 시 당첨자 본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서류제출 장소 :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주택전시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3-15번지)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추첨, 계약일정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14.(금))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제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질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②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당첨자로 선정이 불가함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④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구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내역)	본인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를 확인
	○		⑦ 복부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부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⑧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정(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⑥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인(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를 확인 및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
	○		②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④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특장에 가입한 자
	○		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14)로, 출입국가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내역)	본인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를 확인 및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③ 기본증명서	자녀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인(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
생애최초	○		①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신청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내역)	본인 자녀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를 확인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5>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5>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5>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②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출입/변동사항, 세대구성원,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	③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구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내역)	본인	· 민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⑥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14)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⑧ 단신부임 입증서류 (해외 체류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2. 계약 체결 시 일정 및 구비서류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통·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비고
당첨자 계약 체결	2022.03.11(금) ~ 2022.03.16(수) (10:00 ~ 16:00)	·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주택전시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3-15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사전방문예약제 - 당사 홈페이지(www.elife.co.kr)

-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계약 및 납부방법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농협	동·호수별 가상계좌	경기주택도시공사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 될 예정으로 계약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약자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약과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 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 301동 701호 계약자 → '30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구비 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 발급용 필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포함)	본인	• 접수 장소에 비치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 필수 제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인지세 납부 증명서	-	•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시 사본 제출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할 경우 제외
대리 계약 시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대리인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입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의 일괄 주택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수입인자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시에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함)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명'로서 과세대상인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VIII 기타 유의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사이버 주택전시관), 모집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 사실, 소득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 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황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자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기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 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한 시·군·구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일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업주체의 일괄 주택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위한 주택취득 자금조달(증빙자료 포함) 및 입주 계획서를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다.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 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3.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①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 벌칙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안양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임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련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의 일괄 주택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절차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나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및 "분양권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부칙 제3조]
 - ①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②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등" 처분 기준일(아래의 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③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④ 제2조 제7호의 2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중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⑤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⑥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후모양양자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자로 봄)
 -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⑨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일반공급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국민주택 신청 시에는 유주택으로 봄)
 -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6.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주택전시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은 계약일 이후 사업주체, 시공사와 협의 후 별도 지정됩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중 40% 범위 내에서(중도금 1회 ~ 4회)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원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와 대출취급기관이 별도 협약한 대출 만기일까지이며 계약자 본인이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대출 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시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 정책, 대출 취급 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분양가 9억원 초과 세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보증 대상이 아니므로 중도금 집단 대출은 불가합니다.
- 본 주택 건설지역인 안양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용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용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사,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하여야 합니다.
- 또한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 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취급 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자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정책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일시 납부해야 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IX 기타 안내사항

1. 지구 및 단지계획 여건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계약 전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사업승인 설계도서 비치)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황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환기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차로 및 비상차로 구간은 비상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주차구획선이 있으며 이곳에 입주민은 주차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광장, 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필로티, 설비환기구(DA), 발전기실(DA), 전기실, 쓰레기 분리 보관소, 외부계단 및 외부 엘리베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웨더스테이션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냄새, 빛공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는 도로의 높이 차이 및 단차 있으니 계약전 단지 내, 외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를 거쳐 설치되므로,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로 진입하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은 주택전시관에 조성되어 있지 않으니 해당 도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상 자전거 보관소 등은 설치 위치 및 개소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조, 통풍, 채광, 조망은 동별, 층별,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PIT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용 급/배기구와 같은 설비 환기구가 일부 1층 세대와 인접 또는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비실, 문주, 단지 내 구조물,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조망 등과 같은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문의 높이는 인테리어 계획의 사유로 사업승인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호·라인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이 동 전후 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고, 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각종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입면 특화를 위하여 외부 창호 주변에 돌출장식물, 물딩 등이 설치되어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전 해당 세대는 평면도, 입면도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 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차장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 및 이용(전기 자동차의 주차금지 등)의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도선이 설치되며, 일부동 및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축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에 의해 일부 저층세대에는 빛 공해 및 눈부심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저수조 및 펌프실은 현장여건에 의한 경미한 사업승인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입니다.
- 동, 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세대간 실내가 일부동 투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의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 일부세대는 소음(출차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1.2층 및 지상1층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과 해당시설에 필요한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실외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주민공동시설 등) 및 수경공간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상가)이 연결이 안 되어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세대 타입별로 장비 타입 및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분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정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박이립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기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빌트인 가전 후면 천장 및 바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현관/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 합니다.
- 복도형 아파트(46형)의 복도에 면한 침실에는 세대 내 방범을 위하여 방범용 동체 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공청 및 위성안테나, 웨더스테인션용 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 이동통신 설비등의 시설물, 경광조명설비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설비는 본 공사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창문에서 태양광 집광판 및 관련 설비가 보일 수 있으며 경관 침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기는 공용부 전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위치는 전체 동 주동 지붕에 설치되며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중계장치는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협의에 의해 위치가 선정되었으며, 위치는 추가 협의에 따라 이동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동통신중계 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304동, 305동, 307동, 308동, 309동 옥상에 설치됩니다. 향후 위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는 동과 층이 있으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계 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 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의 배지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세대 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의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하부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규모,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구조에 따라 필로티 하부 자전거보관소 수량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차장(동지하,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벽체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창호크기, 위치, 재질, 외부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상·하차 시 차량 및 신호수의 유성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외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구간 및 깊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정,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각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정, 수경시설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정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정공간에 D/A(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차에 의해 각 동별 출입구 레벨이 상이함을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의 주출입구가 부대시설의 출입구와 인접해 있어 통행 및 이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집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상에서 직접 진입하는 주차장 주출입구 진입 높이를 2.7M이상으로 적용 하였고, 1블럭 지하2층, 3블럭 P1,2,3 4블럭 지하1층 통행로 및 램프의 높이를 택배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2.7M를 적용하였습니다. 단, 3블럭의 P3의 일부구간은 램프 진입 높이와 주차도로는 높이를 2.3M 적용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유료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무인택배보관소는 택배차가 접근하는 층에 (1블럭 지하2층,3블럭 P1,3 4블럭 지하1층) 전체 세대수의 20% 배분하여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은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차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또는 계단실, 복도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전주 및 전선로 등이 지중화 될 경우 단지 내부에 한전공급설비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유무가 입주인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주출입구 레벨은 현상상황에 따라 계획 레벨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계단 및 램프의 위치, 형태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환기오픈구의 크기 및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상부 주차장 계획 및 주차램프 위치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야간 빛공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분양 카달로그나 모형을 통해 인지하여야 합니다.
- 일부 지상부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을 같이 사용함을 분양 홍보물나 모형을 통해 인지하여야 합니다.
- 101동,304동~308동사이 동 하부층에 부대시설, 307동 1층 관리사무소, 308동 1층 어린이집, 401동 인근에 어린이집, 401동~402동 사이 지하층 및 403동 1층에 부대시설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이 101동 1,2호라인 주변, 301동 주변, 311동 1호라인 주변, 401동 주변 하부층에 위치하므로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가 101, 102동 사이, 301, 302동, 307동 사이, 308동, 309, 310동 사이, 401, 402, 403동 사이에 위치하고, 유아놀이터가 309동, 401동에 인접하여 각 1개소가 위치하므로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일부 동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다른 동에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벽 마감은 돌 석재(층수 및 위치 상이함)와 수성페인트 도료로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출입구는 각 동호별로 천장 높이 마감재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도상의 필로티는 동별 라인마다 위치와 높이가 상이하며, 1-2개층 필로티입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하수도 사용료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도난이나 기밀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가 계획되어 위치와 높이가 상이하며, 1-2개층 필로티입니다.
- 단지 내 우수재활용을 위하여 빗물저류조(처리시설)가 301동에 인접하여 1개소가 지하층에 설치되어 소음, 진동에 의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특성상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산배치되어 실외기실이 주동출입구 및 보행자 통로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상 보행통로는 비상시 소방도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공공보행통로는 24시간 개방된 공간으로 입주민의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로써,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구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입구에 시공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308동 1층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됩니다.
- 아파트 최상층 옥상에 경관을 위한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가 있으나, 각 세대 거실창에 유리난간이 설치되어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사는 불가(엘리베이터를 통해 이사 가능)하며, 입주 시 세대별 이사일자는 사전예약 접수를 받아 관리할 예정입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 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01동 앞 주민공동시설 1층에 위치한 프로그램실 1-4는 입주민 외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커뮤니티시설(안양시 운영예정) 임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층세대의 경우 차로, 보행로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에서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대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소음, 냄새 및 해충등에 의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공유시설물(놀이터, 운동시설(외부), 보행로 도로 등)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01동의 엘리베이터 홀에는 평면구조상 채광/환기장이 설치되지 않으며, 계단실 및 복도 창호를 통해 채광·환기가 가능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출입문과 세대 현관문이 마주하고 있는 세대 등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정화조 설치에 따라 아파트 일부동 측벽 및 코어외벽에는 정화조 배기덕트 및 지붕층 정화조 배기탑 설치로 입면이 변화될 수 있으며,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도시가스 정압기가 지상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및 냄새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아파트 외벽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공용 공급배관이 해당 점포 천장속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단지(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는 지역난방 공급이 가능합니다.
- 단지 내 단차로 인해 308동, 311동은 단지의 하단 레벨(GL+56)에서만 출입/진입이 가능하며, 303동은 단지의 상단 레벨(GL+64)에서만 출입/진입이 가능하며, 이동시 외부계단을 이용해야 함을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03동의 저층세대는 단지 배치상 외부 보행자통로와 인접해 있어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입면은 공사여건에 따라 전시된 모형과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 바랍니다.
- 주차대수는 전기차 충전구역 포함하여 산정되었으며,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일반 주차가 불가함을 인지하시고 계약 바랍니다.
- 2블럭의 외부 조경의 일부 구간은 1.2블럭의 레벨차에 의한 용벽선 구획으로 대지지분은 1블럭에 귀속되어 있음을 확인 바랍니다.
- 303동, 304동, 305동, 306동, 309동 저층부는 인접 외부대지(안양대학교 등)와의 레벨차로 인해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309동, 310동의 저층세대는 지하주차장 램프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블럭 305동,306동 인근에 종교시설인 한미사가 위치하여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블럭 대지경계에 종교시설(원불교)용지가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블럭 인근에 역사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폐공사, 도광사, 용천사, 천광암, 장안사 등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블럭 부출입구(비상차 전용)와 인접하여 근명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학교근접도로와 단지경계가 접해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블럭에 인접한 저밀주거용지는 분양결과에 따라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제외)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인접 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 부위에는 직접 외기에 면해 결로에 취약하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새시 설치기준은 주택전시관 및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일반, 주방) 배면, 바닥에는 시공 전후 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빌트인 가전 후면, 천장 및 바닥의 마감재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목장류, 가구류 바닥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골조와 이질 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상의 이유로 주택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 등과 같은 불박이류가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과 빌트인 가전 후면, 천장 및 바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 바닥에는 별도 마감재(강마루)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에 가스배관,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평면이라도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열성능 및 창호 기밀성능 강화와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시켜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전기분전함 및 통신단자함, 급수·급탕 계량기, 월패드, 각종 스위치 등의 설치로 해당부위의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와 선반구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형태, 나누기, 고정방식, 색상, 두께 및 재질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기본형)단위세대는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외부골조에는 콘크리트난간 및 일부 투시형난간대가 설치되어 외부면이 확장형 단위세대와 상이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직접외기에 면해 결로에 취약하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확장 부위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제15조제3항에 의거하여 입주자의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주택전시관, 팜플렛에 적용된 마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허 및 의장등록 또는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별도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및 관리주체에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수량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설비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선홍통 및 드레인의 위치 및 개수는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고, 인접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새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동등 품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세대 내 설치 되는 세대분전함(전기/통신) 및 전기 관련 기기등의 위치, 타입, 수량은 인허가 및 관계기관 검토, 시공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 주체에게 위탁 함.
- 본 아파트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동일 주택형의 아파트라도 토지등소유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에 대해 마감재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형에 따라 공간계약 등의 사유로 마감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주방TV 위치는 창호 개폐, 가전제품, 주방용품 배치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통신단자함, 분전반의 위치는 공사중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위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사항

- 단지 내 조정,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주택전시관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위세대 선택 시 제품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와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 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정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관청과의 협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능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 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 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연계 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위세대 실별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특성상 위치, 크기, 동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 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 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방식 차이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동 배치 특성에 따라 대부분 동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시공됩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 단열 및 마감재, 세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CS센터 및 자체창고로 308동 지하2층 주차장 창고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있는 창고는 입주자들을 위한 CS자재창고로 운영될 수 있으며(사용기간 변동 가능) 민원관련 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동파의 주거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정(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식재되는 나무의 종류 및 배치는 모형 및 분양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놀이시설물을 포함한 단지 내 시설물의 디자인과 배치는 모형 및 분양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인접 건물에 의해 조망, 일조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나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내 단지 및 세대 도면이 비치되어 있으나 청약예정자는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소방 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공사 진행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 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 자재(위생기구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 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101동,305동,307동,403동에 인접하여 지하층에 저수조, 소화수조, 펌프실(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동파의 우려가 있는 저층, 고층 일부 세대용 수도 계량기의 동파 방지용 열선 전원은 공용 전기 요금 부과됩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보도 부분에 대한 관리는 입주민이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관련 조례, 시행규정 등의 절차에 적합한 설계변경, 또는 관리처분 기준, 관리처분 총회 의결기준 등의 정당한 절차에 의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축아파트의 설계내용은 그 변경 인허가 결과에 따릅니다.
-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 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기초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녹지 제49호는 1블럭, 2블럭에서 계단을 통하여 진입할 수 있으며, 경관녹지 50호는 3블럭에서 연결통로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으나 경관녹지 내 부지 고저차에 의해 무장에 진입동선이 아니며, 향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건에 의거 경관녹지 49호 및 50호는 도시공원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상에 표현된 D/A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탑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각 동 주변에 노출되거나 세대와 인접해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보행 및 단지 진출입시 바람, 소음, 매연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소음, 진동, 열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의 경우 시공 과정에서 디자인 및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전기차 충전구역 포함하여 산정되었으며,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일반 주차가 불가함을 인지하시고 계약 바랍니다.
- 2블럭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행복주택이 설치됩니다.
- 1블럭의 101동은 분양전환임대세대로 구성된 동임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블럭, 4블럭의 46형은 복도형 아파트임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인·허가에 따라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 차량 동선 등), 부대 복리시설(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조정공간 등은 실 시공 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의 도로(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전주 보안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용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비상용 발전기 등 시설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사용상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는 지형의 특성상 단차가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쓰레기는 단지 내 별도의 수거시설을 사용하며, 차량을 통한 수거 예정입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

- 실외 어린이놀이터, D/A(설비 환기구), 쓰레기분리수거장,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진동·냄새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충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 웨더스테이션용 안테나, 이동통신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 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부 색채, 입면(창호 형태 등) 및 옥상구조물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으며, 선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 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 시공 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1블럭 지하1~지하2층, 3블럭 304동~308동 사이, 4블럭 401동과 402동 사이의 지하1~지하2층에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스크린골프룸 등의 부대시설이 배치되어 있으며 단지별 별도의 지상1층에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량당, 키즈스테이션,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위치하고, 3블럭 오픈지라운치 1~3층에 실내용놀이터, 게스트하우스, 스튜디오와 별도의 에듀센터가 계획되어 있어 인접세대(수직,수평)에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 사양은 지하층, 1층, 2층 이상의 기준층 엘리베이터 홀 마감사양이 서로 상이합니다.
- 각 등과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측면에는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침해 등으로 사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등 옥탑 지붕 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 등·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축리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웨더스트레이션 안테나가 옥상 상부에 설치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도형 세대의 경우 복도 측벽에 소방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 및 하향식 피난구가 노출 설치되어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복도가 실외 노출될 경우에는 소방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세대의 오배수 배관은 실외 노출 복도 천장중 공간에 설치되며 유지관리를 위한 천장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휴게공간은 외기에 면해있어 우천시 비 들이침과 겨울에 눈이 쌓일 수 있으며,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101동, 307동, 403동 옥상에는 방송(TV) 안테나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주택전시관에는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 별도의 전시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당 전시품이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전기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 월 패드, 콘센트 및 스위치, 소방시설, 디퓨저, 바닥배수구 및 배선기구류 등의 위치와 사양 및 수량은 변경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 배관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 합니다.
-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확장 시 새시창은 이중 창호[PL 창]가 설치되며, 창호 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열림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열 성능(TDR값 제외)은 동등 이상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 비확장성 발코니 내부세시는 이중창이 설치되며, 외부골조에는 새시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외기실은 그릴 창으로 설치됩니다.
- 새시창이 설치되지 않는 비확장 세대는 주방과 면한 발코니에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고, 방과 거실과 면한 발코니는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비확장형(기본형) 단위세대는 발코니 외창은 미설치 되고, 거실 창은 일반 PL 창으로 시공되며, 외부골조에는 철제 난간 대가 설치되어 외부 입면이 확장형 단위세대와 상이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는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비확장성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 홀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수로 인해 소음 및 천장구간 배관으로 인해 마감면이 달라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세대의 비확장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선 홀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 확장 시 주방에 면한 발코니에만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그 외 발코니에는 수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 세대에서는 발코니 배수 입상관이 시야확보 및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세대별 입상관 위치도 상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타입별로 발코니 및 실외기실 배수방식이 상이하게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의 천장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 및 보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등박스의 크기, 커튼박스의 크기, 시스템에어컨(기본제공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스프링클러 헤드, 원형 디퓨저 등 천장 부분이 변경(위치 및 깊이 등)될 수 있습니다.
- 경량벽체는 시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조적 벽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새시 설치기준은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세대 타입별로 장비 타입 및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사용 시 원활한 에어컨 동작을 위해 실외기실에 있는 그릴 창 및 반드시 방충망을 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 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전기, 설비 공사상 일부 노출 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 자재 내용은 평형별, Type 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설계 및 시공상의 이유로 세대의 모든 난간대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단위세대 커튼박스 위치와 높이, 사이즈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 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류)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실외기 그릴의 손잡이 모양 및 개폐작동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KT 일반전화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상부 장 뒷면 또는 측면으로 가스 배관이 설치되므로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감자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및 가구의 용량/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일부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 배관(천장)으로 미관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46타입은 별도의 실외기실이 설치되지 않고, 침실1 창호에 면하여 외부에 실외기설치공간이 계획됩니다.
- 세대 환기 장비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 장비 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코니 천장높이 및 문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도면의 각 세대 주방 창호 크기는 창호 프레임 끝단 간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창호 프레임 일부가 마감재로 덮혀 시공되므로 세대 내부에서 창호 크기가 실제 크기보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 건축법상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는 세대의 실외기실 바닥에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2층 이상 세대의 실외기실에는 상부 세대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공간 및 대피를 위한 동선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제반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상부층이 최하층일 경우 해당세대의 바닥에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나, 1층에 세대가 있는 2층의 경우는 설치가 됩니다. 단, 46타입은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타입별로 세대별전반, 통신 단자함, 월 패드의 설치 위치 기준이 상이합니다. 건립세대에 설치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고하시어 계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발코니, 실외기실 등 천장에 구조를 위한 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스위치, 콘센트, 월 패드류의 제품은 기능과 미관 향상을 위해 색상, 디자인, 버튼 구성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주방, 침실의 콘센트 중 일부는 대기 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부착형 콘센트의 수량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통합 공기질 센서가 설치될 예정이며, 타입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 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히 및 의장등록 또는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 홍보물,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미포함 품목이 혼합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 색상과 마감이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단열공사 외 환기 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당사의 책임이 없음)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 창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 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되는 마감재의 사양과 색상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주택전시관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주방아일랜드장,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 등과 같은 붙박이류가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과 빌트인 가전 후면, 천장 및 바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 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목재문, 가구 및 디자인 월 등의 인테리어 시트는 자재 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침실1,2,3의 외기면 벽체와 만나는 내부 벽체 모서리에는 도배하자 방지를 위한 줄눈이 시공됩니다.
- 천실 및 욕실 도어 프레임의 사이즈, 재질, 단차,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공사 시 침실 및 욕실도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되며,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목 창호의 하드웨어(경첩, 스토퍼, 등)와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 타일, 벽 패널, 거실 디자인 월, 복도 패널 등의 마감재는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의 면적 및 평면형태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내부 가구류(화장대 및 일반 가구)도 세대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사이즈,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합니다.
- 주방 창 프레임의 규격이나 소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 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렌지후드 상부장에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아일랜드장 포함)의 배치, 동선, 복도폭, 수납량 등은 세대 타입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및 벽체마감재의 이음 부분이 노출되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욕실, 발코니의 타일 패턴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자재의 컬러나 무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천장 상부 몰딩의 규격 및 형태,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 단자함 및 전기 분전반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과 디자인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내부 수납 치수 및 인조대리석 선반의 마감 디테일(치수,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높이는 설비, 전기 등의 배관, 배선 공사 시 기능상의 이유로 높이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거실과 침실1에는 천장형 에어컨이 기본 설치되며, 그 외 침실은 에어컨은 설치되지 않고 천장형 에어컨용 냉매배관만 설치되며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추가선택품목 공사 미 선택 세대의 에어컨은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개별 설치하여야 하며, 벽걸이형 및 스탠드형 설치는 불가하고 천장형 에어컨만 설치가능 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부세대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일부 세대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 피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화재 시 피난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 해당 세대, 하부 1개 층 세대는 개폐 시 알람 경보가 울리게 됨) (46타입 제외)
- 추가선택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추가선택품목 및 평면 선택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마감에 의한 줄눈나누기, 건축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 패드, 전기 분전반, 통신 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한국건설기술연구원(KEC) 232,84)에 의거하여 세대 분전반이 세대 내 벽체에 매립되고, 분전반커버는 노출 시공됩니다. 위치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본선설비 외에 계약서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비화장 발코니 및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장 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 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추후 발코니 및 거실 빨래건조대, 벽걸이 TV 등의 설치 시 매립 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소 보관 중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 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내 벽체에는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 배관라인(보통 수직 형성), 전열 기구 배관라인(보통 수직 형성)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 지양해야 합니다.
- 아일랜드장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이 노출되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타입)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구획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며, 관련 민원을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동 빨래건조대가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의 설치장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냉장고 등 가전용 콘센트 위치는 추가선택품목 타입의 냉장고장 위치를 기준으로 설치됩니다.(일부 타입은 상이할 수 있음)
- 46 타입 세대의 세탁공간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나란히 배치(수평배치)할 수 없는 구조로 상하배치만 가능하며,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6 타입 세대의 세탁실은 실내에 위치하고, 세탁실 도어는 가구형 도어로서 밀폐되지 않아 세탁기 사용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6 타입 세대는 공간 제약상 침실에 면한 외부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환기는 전열교환방식이며 환기장비는 실외기실에 설치됩니다. 단, 46형 세대는 거실 천장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별도의 제균기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에 우물천장 직간접 조명이 설치됩니다. 하향조명(메인조명)은 밝기 조절이 가능하지만 상향조명(간접조명)은 밝기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조명이 끊어지는 파티딩라인이 형성되고, 렌지 후드장 내 SMPS 패널이 설치됩니다.
- 욕실 스위치(조명 회로) 구성은 주택전시관을 기준으로 시공되며, 추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VR 동영상의 홍보용 가구소품, 디스플레이, 전사용품 등은 분양가에 미포함 됩니다.
- 74B3형은 세대 조합 배치상 주방 벽체가 타 세대와의 간벽이므로 주방창이 없으나, 자동환기 시스템 외 별도의 천정형 배기팬이 주방발코니에 추가로 설치되며, 천정형 배기팬으로도 환기가 가능합니다.
- 59, 74, 84타입의 경우, 2층 이상의 세대 발코니에 인접세대 대피를 위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단, 1개층 필터 세대의 경우 3층 이상의 세대에만 설치되며 2개층 필터 세대의 경우 3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대신 환기기가 설치됩니다.
- 복합 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복합 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합 환풍기의 리모콘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세대 주방 및 화장실 배기 방식은 당해층 직배기 방식입니다. 단, 46 타입의 경우 주방 배기는 공용 건식AD, 화장실 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46 타입의 경우 주방 공용 건식AD를 통하여 일부 세대간 소음 전달 및 냄새가 유입될 수 있으며, 관련 민원을 시공사에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주방 배기는 소음 저감을 위한 팬블리허 렌지후드가 적용되며, 발코니II(보조주방)에 분리형 팬이 설치되고 이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다만, 46 타입의 경우 일반형 렌지후드가 적용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화장실 배기팬은 환기, 온풍, 제습, 드라이 기능이 내장된 복합 환풍기가 설치되며, 온풍, 드라이 모드 가동 시 환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배관 통과 방지를 위해 세대로 들어가는 배관에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공용 전기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방법용 동체 감지기는 지상1,2,3층(필로티포함) 및 최상층에 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위치/전기분전반/월패드/통신단자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유선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유선 평면 선택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전기 공정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침실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 전기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이 통합 또는 개별 설치됩니다.
- 주방 TV 설치 위치는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수기, 전자렌지, 전기 밥솥 등의 배치 시 간섭될 수도 있습니다.
- 기본제공 품목 중 현관 중문은 46형은 여닫이 타입이며, 59형 ~ 84형은 3연동 슬라이딩 타입으로 설치됩니다
- 기본제공 품목 중 천장 시스템에어컨(거실, 침실1만 기본제공)은 분양 계약시 가전사를 선택하셔야 하며, 추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 기본제공 품목 중 현관 중문은 분양 계약시 유리 색상을 선택하셔야 하며, 추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현관에 설치되는 중문의 유리면은 외부 스크래치에 약하므로 사용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세미 청소 금지 등)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유시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및 램프 지붕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높이는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 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까지 차량 동선이 단지 출입구를 통하여 진입하므로 입주자 차량과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블럭, 3블럭, 4블럭 지하주차장 출입동선은 입주자 동선과 방문자 동선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단, 1블럭 4블럭 방문자 동선의 차단기 위치는 근린생활시설 주차구역을 통과하여 설치되므로 근린생활시설 주차차량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자연환풍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풍 및 기전실(101동, 305동, 307동, 403동)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실내 휘트니스 등)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 주거 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옥상, 전실 및 홀 등은 주거 공용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질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하수도 사용료 포함)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가 외부 가로수로 인한 조망 등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 상가 외부에 볼라드, 가로등 보차로 구분용 렉스, 각종 계시판, 버스 쉼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및 지상 주차장 주변부 녹지대는 면적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모형,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용 복도의 사용시간은 단지 내 상가 협의회(가칭)와 단지 내 주민협의회(가칭)의 협의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제단, 안전, 소방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 따라 시공 시에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도서 상의 실선을 기준으로 구획되어 있고, 주차구획선 표기 시 좌·우측 부분에 편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역은 기본 일반주차 구역으로 설치되나, 현장여건에 따라 확장형 주차구역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에 적용되는 공기청정형 에어컨의 경우 실벽 시스템에 따라 일부 구간은 일반형 에어컨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시공 시 단지 주변의 레벨 변경에 따른 단지 내 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합니다.
- 주택전시관 내 설치된 CCTV는 주택전시관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주택전시관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조명,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스마트스위치/ 분전함의 설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본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유의사항

-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 피트니스센터에 운동기구가 제공될 예정이며, 설계 및 제공되는 운동기구(의자, 소파 등 이동식가구 등 기타 비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음)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경미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보도포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일부 세대 부근 및 외부 조정공간에 설치되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양 시 안내되었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이 상시 접근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별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므로, 사업 주체에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후분양에 따른 MD계획이 미확정하므로 MD계획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에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어 인접동에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절기에는 수증기 등이 보일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근린생활시설과 접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이 상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일부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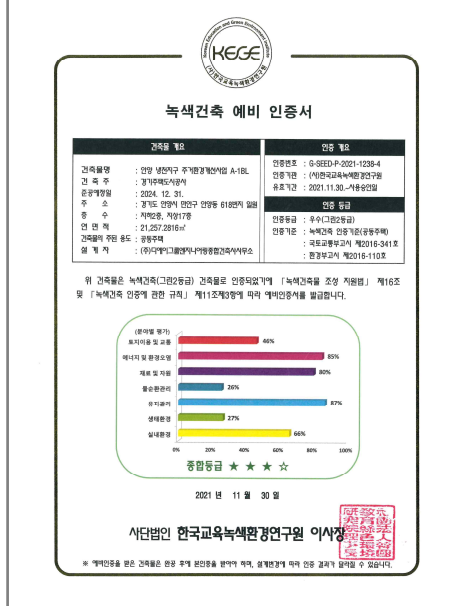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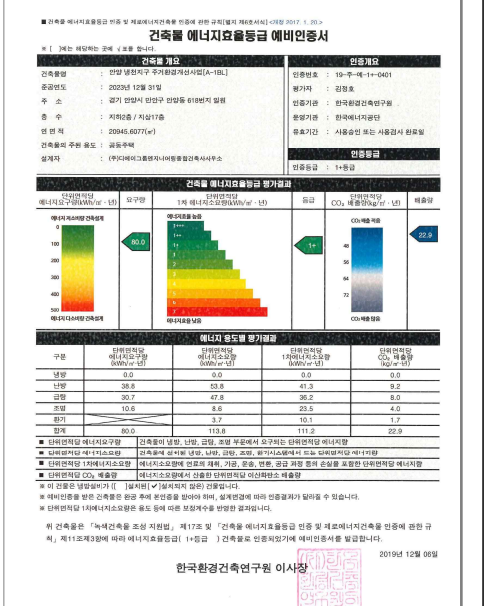
■ 홍보물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택전시관을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 조정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정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반드시 직접 방문해 보시기 바라며 인쇄상 오류가 표기가 있을 시 관련 법규를 우선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정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합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당사와는 무관하며, 사업 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기관의 사업으로 추진 중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부대시설 실내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및 시설기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명칭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 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일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업주체의 일괄 주택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위한 주택취득 자금조달(증빙자료 포함) 및 입주 계획서'를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 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사업지 내 계획중인 유치원 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는 향후 유아수용계획 확정 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의거 유치원 설립자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득한 후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2에 따라 2019. 9. 25. 이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7호에 따른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사업지구 내 증가 초등학교는 현 검토 시점에서 안양초 배치 불가능하나, 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입주시기에 맞춘 통학구역 조정 및 안양초 증축으로 교실이 확보된다면 배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학생 배치계획을 검토한 바, 동 공동주택(기준:1.723세대, 계획:2,329세대,증:606세대)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고등학교는 관내 기존학교에 배치 가능합니다.

2.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1.블럭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p>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건축물 개요: 2024년 12월 31일 준공예정, 2024년 12월 31일 입주예정, 2024년 12월 31일 입주예정, 2024년 12월 31일 입주예정</p> <p>인증 등급: 2024년 12월 31일 인증등급, 2024년 12월 31일 인증등급, 2024년 12월 31일 인증등급, 2024년 12월 31일 인증등급</p> <p>종합등급: ★★☆☆</p> <p>2024년 11월 30일</p> <p>시단법인 한국교육녹색발전연구원 이사장</p>	<p>대상아남</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p> <p>건축물 개요: 2024년 12월 31일 준공예정, 2024년 12월 31일 입주예정, 2024년 12월 31일 입주예정, 2024년 12월 31일 입주예정</p> <p>인증 등급: 2024년 12월 31일 인증등급, 2024년 12월 31일 인증등급, 2024년 12월 31일 인증등급, 2024년 12월 31일 인증등급</p> <p>종합등급: ★★☆☆</p> <p>2024년 11월 30일</p> <p>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p>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3블럭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안양 1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 A-3B, C 건축주 : (주)한빛건설 준공예정일 : 2024. 12. 31.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당일로 618번지 일원 층 수 : 지하층, 7층 면적 : 42,835.51㎡ 건축물별 인증 코드 : 공중주택 설계자 : (주)한국건축에너지평가연구소	인증번호 : G-BEED-P-2021-10404-4 인증기간 : 2021.11.30~시행종료 인증 등급 : 우수(2등급) 인증기관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정되기에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2021년 11월 30일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이사장

* 예비인증은 관련 건축물은 관련 규정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 안양 1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 A-3B, C.
 2. 산 공: 경기도 어반포레
 3. 대: 고: 층: 지: 기:도: 안: 양: 시: 동: 안: 구: 당: 일:로: 618: 번: 지: 일: 원
 4. 성: 부: 등: 급

가. 주요 인증 항목

항목	성능등급
1. 단열	★★★★
2. 외기공기 차단	★★★★
3. 방수	★★★★
4. 방음	★★★★
5. 구조	★★★★
6. 기계설비	★★★★
7. 안전	★★★★
8. 기타	★★★★

나. 주요 인증 항목

항목	성능등급
1. 단열	★★★★
2. 외기공기 차단	★★★★
3. 방수	★★★★
4. 방음	★★★★
5. 구조	★★★★
6. 기계설비	★★★★
7. 안전	★★★★
8. 기타	★★★★

다. 환경 관련 항목

항목	성능등급
1. 단열	★★★★
2. 외기공기 차단	★★★★
3. 방수	★★★★
4. 방음	★★★★
5. 구조	★★★★
6. 기계설비	★★★★
7. 안전	★★★★
8. 기타	★★★★

라. 환경 관련 항목

항목	성능등급
1. 단열	★★★★
2. 외기공기 차단	★★★★
3. 방수	★★★★
4. 방음	★★★★
5. 구조	★★★★
6. 기계설비	★★★★
7. 안전	★★★★
8. 기타	★★★★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KECE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이사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17회 대통령령 제2017-1-20)에 따른 인증서

본 인증서는 해당건축물의 성능을 나타내는 인증서입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 안양 1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A-3B, C)	인증번호 : 19-주-에-14-0404	평가자 : 김희호	인증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준공연도 : 2023년 12월 31일	평가자 : 김희호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자 : 한국에너지공단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당일로 618번지 일원	면적 : 42,835.51㎡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자 : 한국에너지공단
층 수 : 지하층, 7층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자 :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 236,361.20㎡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자 :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의 추진 코드 : 공중주택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자 :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설계자 : (주)한국건축에너지평가연구소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자 :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인증등급 : 1등급

종합등급 ★★★★★

2021년 12월 09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및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은 인정바닥구조에 대한 성능등급이며, 준공전 현장 측정시 인증서상의 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4블럭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안양 1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 A-4B, C 건축주 : (주)한빛건설 준공예정일 : 2024. 12. 31.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당일로 618번지 일원 층 수 : 지하층, 7층 면적 : 42,835.51㎡ 건축물별 인증 코드 : 공중주택 설계자 : (주)한국건축에너지평가연구소	인증번호 : G-BEED-P-2021-12414-4 인증기간 : 2021.11.30~시행종료 인증 등급 : 우수(2등급) 인증기관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정되기에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2021년 11월 30일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이사장

* 예비인증은 관련 건축물은 관련 규정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아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17회 대통령령 제2017-1-20)에 따른 인증서

본 인증서는 해당건축물의 성능을 나타내는 인증서입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 안양 1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A-4B, C)	인증번호 : 19-주-에-14-0404	평가자 : 김희호	인증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준공연도 : 2023년 12월 31일	평가자 : 김희호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자 : 한국에너지공단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당일로 618번지 일원	면적 : 42,835.51㎡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자 : 한국에너지공단
층 수 : 지하층, 7층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자 :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 236,361.20㎡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자 :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의 추진 코드 : 공중주택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자 :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설계자 : (주)한국건축에너지평가연구소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자 :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인증등급 : 1등급

종합등급 ★★★★★

2021년 12월 09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항,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전동기(라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1블럭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30,167,238	
			기간이자	1,081,575	
공사비			필요적 경비	739,701	
			그 밖의 비용	229,159	
			계	32,217,673	
건축비	토목			토공사	262,291
				흙막이 공사	
건축비	토목			비탈면보호공사	11,996
				옹벽공사	20,017
건축비	토목			석축공사	
				우·오수공사	54,225
건축비	토목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19,994
건축비	토목			도로포장공사	43,381
				교통안전시설물공사	15,891
건축비	토목			정화조시설공사	16,935
				조경공사	306,006
건축비	토목			부대시설공사	10,845
				계	761,581
건축비	건축			공동가설공사	380,911
				가시시설물공사	199,743
건축비	건축			지정및기초공사	196,465
				철골공사	
건축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3,129,313
				융접공사	
건축비	건축			조적공사	142,206
				미장공사	120,227
건축비	건축			단열공사	116,765
				방수·방습공사	134,442
건축비	건축			목공사	220,250
				가구공사	458,259
건축비	건축			금속공사	209,320
				지붕 및 홀통공사	5,647
건축비	건축			창호공사	478,850
				유리공사	9,501
건축비	건축			타일공사	240,661
				틀공사	366,369
건축비	건축			도장공사	131,369
				도배공사	98,766
건축비	건축			수장공사	839,030
				주방용구공사	22,804
건축비	건축			그 밖의 건축공사	51,253
				계	7,552,151
건축비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114,866
				급탕설비공사	75,552
건축비	기계설비			오수·배수설비공사	168,901
				위생기구설비공사	194,302
건축비	기계설비			난방설비공사	198,346
				가스설비공사	48,859
건축비	기계설비			자동제어설비공사	43,034
				특수설비공사	566,080
건축비	기계설비			공조설비공사	153,209
				계	1,563,149
건축비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490,981
				정보통신공사	344,769
건축비	그 밖의 공종			소방설비공사	429,132
				승강기공사	156,164
건축비	그 밖의 공종			계	1,421,046
				일반관리비	451,918
건축비	그 밖의 공사비			이윤	225,959
				계	677,877
건축비	간접비			설계비	282,786
				감리비	349,502
건축비	간접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190,444
				분담금 및 부담금	825
건축비	간접비			보상비	
				그밖의 사업비성 경비	78,070
건축비	간접비			계	901,627
				그 밖의 비용	
			건축가산비	1,760,896	
합 계				46,856,000	

· 흙막이 공사비용은 택지비 중 "그 밖의 비용"에 포함됨.

◎ 3블럭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262,015,461	
			기간이자	9,393,951	
			필요적 경비	6,424,619	
			그 밖의 비용	3,232,830	
			계	281,066,861	
건축비	공사비	토목	토공사	3,168,366	
			흙막이 공사		
			비탈면보호공사	164,918	
			옹벽공사	275,184	
			석축공사		
			우.우수공사	745,489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274,859	
			도로포장공사	596,391	
			교통안전시설물공사	218,467	
		정화조시설공사	232,804		
		조경공사	2,814,723		
		부대시설공사	149,098		
		계	8,640,299		
		건축	공동기설공사	4,321,532	
			가시시설물공사	2,266,140	
			지정및기초공사	2,228,954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35,502,857	
			용접공사		
			조적공사	1,613,372	
			미장공사	1,363,998	
			단열공사	1,324,726	
			방수.방습공사	1,525,279	
			목공사	2,498,790	
			가구공사	5,199,069	
			금속공사	2,374,799	
			지붕 및 홀통공사	64,066	
			창호공사	5,432,683	
			유리공사	107,789	
			타일공사	2,730,358	
			홀공사	4,156,552	
			도장공사	1,490,408	
			도배공사	1,120,522	
			수장공사	9,519,007	
			주방용구공사	258,723	
			그 밖의 건축공사	581,478	
			계	85,681,102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1,303,187
				급탕설비공사	857,167
				우수배수설비공사	1,916,236
				위생기구설비공사	2,204,405
				난방설비공사	2,250,292
				가스설비공사	554,314
		자동제어설비공사		488,236	
		특수설비공사		6,422,326	
		공조설비공사		1,738,195	
		계		17,734,358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5,570,309	
			정보통신공사	3,911,498	
	소방설비공사		4,868,612		
	승강기공사		1,771,723		
	계	16,122,142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5,076,352		
		이윤	3,172,719		
	계	8,249,071			
	간접비	설계비	3,176,509		
		감리비	3,925,931		
		일반분양시설 경비	2,139,244		
		분담금 및 부담금	9,263		
		보상비			
		그밖의 사업비성 경비	7,401,771		
	계	16,652,718			
	그 밖의 비용	건축가산비	13,768,449		
	합 계			447,915,000	

· 흙막이 공사비용은 택지비 중 “그 밖의 비용”에 포함됨.

◎ 4블럭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69,937,104
			기간이자	2,507,431
			필요적 경비	1,714,858
			그 밖의 비용	2,025,701
			계	76,185,094
건축비	공사비	토목	토공사	874,246
			흙막이 공사	
			비탈면보호공사	39,984
			옹벽공사	66,717
			석축공사	
			우.우수공사	180,741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66,638
			도로포장공사	144,592
			교통안전시설물공사	52,966
			정화조시설공사	56,442
			조경공사	1,019,953
			부대시설공사	36,148
			계	2,538,427
			공동가설공사	1,269,620
			가시시설물공사	665,768
			지정및기초공사	654,843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10,430,364
			용접공사	
			조적공사	473,992
			미장공사	400,728
			단열공사	389,191
			방수.방습공사	448,111
			목공사	734,118
			가구공사	1,527,431
			금속공사	697,691
			지붕 및 홈통공사	18,822
			창호공사	1,596,065
			유리공사	31,667
			타일공사	802,150
			틀공사	1,221,151
			도장공사	437,866
			도배공사	329,197
			수장공사	2,796,583
			주방용구공사	76,010
			그 밖의 건축공사	170,833
			계	25,172,201
			급수설비공사	382,862
			급탕설비공사	251,827
			오수·배수설비공사	562,970
			위생기구설비공사	647,631
			난방설비공사	661,112
			가스설비공사	162,851
			자동제어설비공사	143,439
			특수설비공사	1,886,811
			공조설비공사	510,663
			계	5,210,166
			전기설비공사	1,636,498
			정보통신공사	1,149,157
			소방설비공사	1,430,347
			승강기공사	520,513
			계	4,736,515
			일반관리비	1,333,002
			이윤	999,752
			계	2,332,754
설계비	834,121			
감리비	1,030,913			
일반분양시설 경비	661,745			
분담금 및 부담금	2,433			
보상비				
그밖의 사업비성 경비	3,186,631			
계	5,715,843			
그 밖의 비용	3,793,000			
합 계	125,684,000			

· 휴막이 공사비용은 택지비 중 "그 밖의 비용"에 포함됨.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감정평가금액(산출평균액)	가. 삼창감정평가법인	나. 대한감정평가법인
1블럭	30,167,238	30,298,829	30,035,647
3블럭	262,015,461	260,271,375	263,759,548
4블럭	69,937,104	69,128,157	70,746,050

5.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사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택지비 가산비			
	계	기간이자	휴막이 공사비	기타 비용
1블럭	3,950,435	1,081,576	2,045,866	822,994
3블럭	19,051,400	9,393,951	2,361,773	7,295,676
4블럭	6,247,990	2,507,431	1,781,614	1,958,944

항목	건축비 가산비								
	계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공동주택 상승등급 가산비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친환경 주택건설 추가비용	지하주차장 승고승가 추가비용
				홈 네트워크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	에어컨 냉매배관	기계환기 설비		
1블럭	1,760,896	813,930	-	362,790	91,350	61,560	120,690	160,971	149,604
3블럭	13,768,449	2,458,868	2,499,228	3,065,375	1,135,971	562,498	1,121,013	2,261,572	663,924
4블럭	3,793,000	1,075,332	-	1,000,147	344,773	173,849	346,562	473,892	378,446

6.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아파트명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감리회사(사업자등록번호)	감리금액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경기주택도시공사 (124-82-08978)	디엘이앤씨(주)(676-87-01904) 코오롱글로벌(주)(102-81-50012) 신동아종합건설(주)(114-81-48258)	(주)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220-81-71530)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408-81-42391) (주)케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127-81-60942) (주)건축사사무소테크뱅크(752-86-00309)	11,973,593,000원

7. 주택전시관 및 공식 홈페이지 안내

- 사이버 주택전시관 : www.elife.co.kr
- 주택전시관 위치 및 분양문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3-15(현장 내 위치) ☎1811-8988



8.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동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예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9.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0.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1블럭 지하2층은 2.7m, 3블럭 지하층(P1/P2/P3)은 2.7m, 4블럭 지하1층은 2.7m로 계획되었으며, 1블럭 지하1층, 4블럭 지하2층, 3블럭 P3의 일부구간의 경우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함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1블럭 1개소, 3블럭 2개소, 4블럭 1개소
※주차대수

단지	층	주차대수	세부 구분	
			일반형	확장형
1블럭	지하	210대	일반형 94대 / 확장형 87대 / 장애인 5대 / 경형 21대 / 전기차 충전소 3대	
3블럭	지하	2,020대	일반형 1,228대 / 확장형 641대 / 장애인 48대 / 경형 89대 / 전기차 충전소 14대	
4블럭	지하	431대	일반형 240대 / 확장형 138대 / 장애인 9대 / 경형 40대 / 전기차 충전소 4대	
	지상	11대	일반형 7대 / 경형 4대	

11. 입주예정월 및 부대복리시설 안내

■ 입주예정일 : 2025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부대복리시설

- 1블럭 - 관리사무소/경로당/작은도서관/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등)/어린이놀이터
- 3블럭 - 관리사무소/경로당/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2개소)/작은도서관/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GX, 게스트하우스 등)/어린이놀이터(2개소)/유아놀이터
- 4블럭 - 관리사무소/경로당/어린이집/작은도서관/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등)/어린이놀이터/유아놀이터